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람	기관의 장

제179호 2018. 07. 03.



회람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20)

규 칙

○제1203호 청양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1

청양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3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청양군 규칙 제1203호

청양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청양군수가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청양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청양군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청양군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 및 현행 자치법규 등으로 한다.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조례 및 규칙은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기준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군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청양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2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알려야 한다.

②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요구) 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주관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관계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항목과 조문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 내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관리번호

</td><td colspan="3">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td></tr>
<tr><td>자치법규 명</td><td colspan="3"></td></tr>
<tr><td>구 분
※ ☑ 표시</td><td colspan="3">☐ 제 정 ☐ 개 정 ☐ 현 행</td></tr>
<tr><td>형 식
※ ☑ 표시</td><td colspan="3">☐ 조 례 ☐ 규 칙</td></tr>
<tr><td>관련 법규 명</td><td colspan="3">(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td></tr>
<tr><td rowspan="2">주관부서</td><td colspan="2">부 서 명 (과 / 팀)</td><td></td></tr>
<tr><td colspan="2">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3">입법일정(예정)</td><td rowspan="2">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td><td>대상기관
(부서)</td><td></td></tr>
<tr><td>협의기간</td><td>20 . . .부터 20 . . .까지(일간)</td></tr>
<tr><td>입법예고</td><td colspan="2">20 . . .부터 20 . . .까지(일간)</td></tr>
<tr><td>의견수렴절차</td><td colspan="3">1. 법제.감사업무 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td></tr>
<tr><td>별도 붙임자료</td><td colspan="3">1. 자치법규(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td></tr>
</table>

작성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평가 결과
(1) 준수	(1-1)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① 과도하지 않음 ② 과도함 ③ 해당사항 없음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④ 해당사항 없음
	(1-3)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없음
(2) 집행	(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구체적·객관적 (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③ 해당사항 없음
	(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① 명확 ② 불명확 ③ 해당사항 없음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2-3)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3) 행정절차	(3-1)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3-2)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3-3)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③ 해당사항 없음
(4) 부패통제	(4-1) 이행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① 필요성 있음 ② 필요성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 서식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1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